

광주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나58488 판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청구]

전 문

원고, 항소인 종단A(정정전: A)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결 2018. 3. 7.

판결 선고 2018. 3. 28.

제 1 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6가단502024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북구 C대 628㎡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2008. 12. 31. 접수 제214490호로, 광주지방법원 2011. 5. 24. 접수제98600호로 한 순위번호 2-1번, 2-2번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종단 A은 별지 목록 ① 기재 토지 및 별지 목록 ②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8.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05. 8.25. 접수 제482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5. 10. 명칭 및 주소변경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2008. 12. 31. 접수 제214490호로 종단 A의 명칭을 B로 변경하는 2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순위번호 2-1번, 이하 '이 사건 2008년 표시변경등기'라 한다)가 있었고, 2011. 5. 10. 같은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2011. 5. 24. 제98600호로 B의 주소를 충청북도 진천군 D에서 충청북도 진천군 E로 변경하는 2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순위번호 2-2번, 이하 '이 사건 2011년 표시변경등기'라 하고, 이 사건 2008년 표시변경등기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대표자 H은 원래 원고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는데, 종단 I의 분열을 기회로 자신을 신격화하는 별도의 독자적 종교단체인 피고를 만들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종단 A" 즉 원고에서 "B" 즉 피고로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의 재산을 가로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 위법한 등기로서 원래의 등기명의인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위법하게행하여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표시변경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므로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3.15. 선고 2011다9136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에 더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 12, 13, 20, 26,27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종단 A(이하 '이 사건 종단'이라 한다)은, F를 종지회로 하고 포덕천하, 구제창생, 보국안민, 지상천국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종단 I의 지방 하부 독립단체로, 해원상생의 F를 종지로 하고 목적은 종단 I의 위 목적과 같은 종단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여 온 사실, 2 1996. 1. 종단 I의 대표자인 도전 J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단 I 내부에 분열과 갈등이 계속되었고, 이에 이 사건 종단은 I의 이름으로 포교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있어 I의 사상을 바르게 떠나가자는 취지에서 2007. 5. 10. 임시총의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명칭을 "B"로 변경한 사실, ③ 이후 2008. 12. 3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B"로 변경하는 이 사건 2008년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피고 대표자인 H이 이 사건 종단과 독자적인 종교단체로서의 피고 "B"를 만들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로 명칭이 변경된 이 사건 종단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인 표시가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와 같이 변경되었다고 하여도, 그 등기명의인 표시는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이 사건 종단의 소유임을 표상하는 동일한 표시에 불과하고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종단과 동일한 단체라고 해도 소로써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원고와 이 사건 종단이 동일한 단체가 아니라면,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졌다고 하여도, 등기관리자가 아닌

원고가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종단 A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갑 제20호증의 1) 제19조, 제35조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위 명칭 변경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잘못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가 표상하는 이 사건 종단(원고가 이 사건 종단과 동일한 단체라면 원고)이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시정할 수 있으므로, 소로써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원고는 2015. 8.경 H이 이 사건 종단으로부터 분열된 별도의 종교단체인 피고 "B"를 창교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가 피고를 표상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설령 H이 2015. 8.경 이 사건 종단으로부터 분열된 별도의 종교단체인 피고 "B"를 창교하였다고 하여도, 그 이전에 마쳐진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단의 소유임을 표상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진 후에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의 명의인과 같은 명칭의 법인 아닌 사단이 설립되었다고 하여 등기명의인의 실체가 새로 설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 바뀔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는 여전히 이 사건 종단의 소유임을 표상할 뿐 피고를 표상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현호, 판사 황경환, 판사 장 명

[별 지]

부동산목록

1. 광주광역시 북구 대 628㎡.

2. 위 지상 세멘벽돌조 세멘화집 평가건 주택

건평 59.72㎡

부속건물

세멘벽돌조 슬레이트집 평가건 주택

건평 70.50㎡

세멘벽돌조 슬레이트집 평가건 창고

건평 7.40㎡. 끝.